

제322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2025. 12. 8.(월)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고종선

- 목 차 -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1
2.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마트경로당 지원 조례안	6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9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등 일괄개정조례안	18
9. 대구광역시 달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756호
- 제출 일: 2025년 11월 27일
- 제출 자: 서도원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5년 12월 2일

2. 제안사유

-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면서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하여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 및 도시 미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적용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제4조)
- 계획 수립 등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8조)
- 가로수 관리 사업 및 주민참여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1조)

4. 관계법령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대구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5. 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달성군민의 도시녹지 수준을 높이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로수의 조성,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과 인간이 조화로운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 가로수 관련 상위 법령으로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제6조의2에서 가로수 조성 및 관리계획 수립 등을 명기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4조의2에서는 포함사항(현황·진단·목표·관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구광역시 또한 2018년에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계획 수립, 가로수 조성, 가로수 관리, 관련자료의 유지 및 보고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이를 준용하여 군 단위의 행정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① 군수의 연차별 가로수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
 - ② 도로·보도 등 관련 부서와의 사전협의 절차,
 - ③ 가로수 식재·전정·보호 등 관리체계 정비,
 - ④ 주민의 자율참여 및 교육·홍보 강화,
 - ⑤ 관리대장 작성 및 정기점검 실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대구 관내 타 자치구의 입법 동향을 보면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서구, 북구에서 가로수 조성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여 가로수의 생육 관리 및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춘 안건으로 판단됩니다.

-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이 확보되어 있으며, 광역시 조례를 합리적으로 준용(안 제5조제2항 및 제5조제3항)하고 있어 적법성 및 정책 타당성 모두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행규칙 또는 별표로 위임하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 종합적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달성군의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개선,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공익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에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757호
- 제출일: 2025년 11월 27일
- 제출자: 서도원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5년 12월 2일

2. 제안사유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발전을 위해 기부하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기부자 관리 및 예우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4. 관계법령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달성군의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한 개인이나 단체의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 기부 관련 상위법령으로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 있으며, 상위법령 위임에 따른 심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행령 제12조~제14조에서 위원회 구성·운영 및 예우의 구체적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제5조의 위임에 따라 안 제5조의 사항을 명기하였으며, 추가로 기부자의 관리 예우 등을 추가하여 지역 내 기부문화의 뜻을 기리고 문화를 촉진하고자 하였습니다.
- 종합적인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자 한 점, 기부자의 관리 및 예우 등을 명기하여 기부문화의 뜻을 기리고자 한 점등을 토대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마트 경로당 지원 조례안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758호
- 제출일: 2025년 11월 27일
- 제출자: 박주용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5년 12월 2일

2. 제안사유

-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로당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 정보통신기술 등의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시대 변화에 발맞추어 노인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 스마트경로당에 대한 필요성은 코로나19로 인해 급작스럽게 경로당이 대부분 폐쇄되었던 것을 계기로, 경로당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높이고자 등장하였습니다.
-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기술을 활용한 지역사회 디지털화 촉진을 위해 ‘2024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예산을 1,039 억으로 확정하고 지자체의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구축하고자 추진 중입니다. 스마트경로당 사업의 주요 성과로는 2021년 부천시(45개소)와 유성구(65개소)에서 화상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여가·건강 프로그램 운영과 키오스크 도입 등을 통해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후 2024년에는 전국 14개 시·군¹⁾에서 스마트경로당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또한, 2024년 대한노인회에서는 『스마트경로당 대한노인회 모델』을 발표, 현재 스마트경로당 설치 모델의 단방향성을 넘어서는 관계기관, 지자체, 대한노인회 양방향 소통 및 공유가 가능한 모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1) ①서울 관악구, ②경기 광명시, ③인천광역시, ④인천 옹진군, ⑤강원 태백시, ⑥충남 보령시, ⑦충남 당진시, ⑧전북 전주시, ⑨전북 무주군, ⑩전북 남원시, ⑪전남 목포시, ⑫전남 광양시, ⑬경북 경산시, ⑭경남 사천시



그림 1. 대한노인회 스마트경로당 모델(<https://www.koreapeople.or.kr/info/smart>)

- 현재 스마트경로당과 관련한 별도의 조례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종합적인 검토결과,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한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기술혁신을 통한 노인여가시설의 기능강화의 일환으로 스마트경로당은 도입되고 있으며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공모사업으로 시행중입니다. 스마트빌리지 사업 확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본 조례안은 국책사업의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아직 전국적으로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달성군이 선제적·주도적으로 제정함으로써 향후 제도 정착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령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안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755호
- 제출일: 2025년 11월 27일
- 제출자: 전홍배 의원 등 5인
- 회부일자: 2025년 12월 2일

2. 제안사유

- 최근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달성군 또한 다가오는 초고령화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고령친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누구나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를 구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3조)
- 시행계획 및 조성 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8조)
- 협력체계 구축 및 실무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 행정지원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1조)

4.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대구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의3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고 모든 세대가 함께 살아가기 좋은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달성군의 고령친화도시 조성 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2024년 「노인복지법」 이 개정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친화 도시 조성과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법적 근거가 명시(2026년 1월 시행예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여건과 인구 구조를 반영한 고령친화도시 조례를 속속 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화는 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적극 대응 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필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 세계보건기구(WHO)는 고령친화도시의 핵심 요소로 ▲야외공간과 건축 물 ▲교통 ▲주거 ▲사회참여 ▲존중과 사회통합 ▲시민참여와 고용 ▲ 의사소통과 정보 ▲지역사회 보건 및 돌봄의 8개 영역을 제시하고 있습 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국제 기준을 달성군 현실에 맞게 구현하기 위 한 8개 영역을 3개의 조성방향으로 새로이 유목화 하여 기본방향을 제 시하고 있으며, 향후 시행계획 수립 시 고령친화도시 핵심 요소들을 세 부 과제로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노인 복지사업을 넘어, 지역 전체가 세대 통합적 관점에서 ‘모두에게 친화적 인 도시환경’을 만드는 정책 전환의 의미를 지닙니다.

- 현재 대구광역시 내에서는 광역, 북구, 동구, 남구, 서구 등 다수의 기초 자치단체가 이미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타 자치단체의 사례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이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지역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본 조례안은 단순히 노인복지에 국한되지 않고, 도시계획, 교통, 주거, 보건, 평생교육 등 다양한 분야 간 협력과 연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관협력체계(안 제17조), 교육 및 홍보(안 제18조), 포상제도(안 제19조) 등을 함께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화 대응정책을 행정 중심이 아닌 주민참여형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 종합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에 따라 적법하게 제정될 수 있으며, 조문 체계와 내용 또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시행을 통해 달성군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하고, 다양한 부서와 기관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고령친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다만, 향후 시행계획 수립 시 조례안 제9조 및 제16조에 명시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및 모니터링단을 필히 구성하여 지역사회 생태계를 주민이 만들어가도록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760호
- 제출 일: 2025년 11월 27일
- 제출 자: 박주용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5년 12월 2일

2. 제안사유

-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위생업소의 위생 관리를 지원하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달성군민이 안전하고 깨끗하게 위생업소를 이용하는데 기여함으로써 달성군민의 건강 보호·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령 정의 인용 조문 명확화(안 제1조 및 제2조제4호)
- 식품 안전 강화 및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 관리 사업 지원 근거 신설(안 제4조제5의2호)

4. 관계법령

-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달성군 내 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수준 향상과 군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위생업소의 위생 관리를 지원하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 현행 조례는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만을 인용하고 있어 식품안전 정책 전반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안전기본법」을 추가 반영하여,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에서의 안전 확보 및 지방정부의 책무를 명시한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 안 제2조제2항나목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른 우수·모범업소 지정 등에 관한 법령이 삭제되어 2028년 시행이 예정되어 있으나, 사전에 조례를 정비하여 관련 대상자들의 혼동을 줄이고자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 안 제4조제5호의2는 기존 5호의 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한 관련 단체의 사업 내용을 위생 관리사업으로 명기하여 사업의 구체성을 확보 하였습니다.
- 종합적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의 체계 정비, 행정집행의 명확화, 위생수준 향상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759호
- 제 출 일: 2025년 11월 27일
- 제 출 자: 양은숙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5년 12월 2일

2. 제안사유

-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마을공동체와 관련하여 기본 조례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한 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문을 신설하고,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문을 현행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달성군에서 마을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지원받으며,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안 제7조의 2)
- 지원사업 및 위원회 구성·운영 등 규정 정비(안 제8조~제21조)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을 ‘마을공동체 활동’으로 변경함으로써 주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활동임을 강조하여 공동체 자율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 개정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공동체 활동 관련 정책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를 공동체 활동 전반의 기본조례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제7조의2를 신설하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체 활동 발굴·네트워크 조성·중앙 및 광역사업 연계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 기능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행정지원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 종합적인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 주체성을 반영한 용어 정비, 행정기반 강화, 재정지원 투명성 강화 등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에 따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766호
- 제출 일: 2025년 11월 28일
- 제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5년 12월 2일

2. 제안사유

- 비용추계의 방법 및 제출 절차를 명확히 하며, 관련 서식을 보완·신설하여 입법절차의 통일성과 행정 운용의 체계를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용어 정비 및 비용추계 방법 명확화(안 제2조제4호, 안 제9조제1항, 안 제10조제3항·제4항·제6항 등)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출 근거 신설(안 제9조제5항, 안 제12조제2항)
- 별지 서식의 보완 및 신설(안 별지 1, 안 별지 2 신설)

4. 관계법령

-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 절차상 비용추계의 방법 및 절차를 보다 구체화 하여 향후 자치법규 제·개정 과정에서 재정영향 분석의 객관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이번 개정사항에서는 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에 벗어난 사항에 대해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출 근거를 신설함(안 제9조제5항, 안 제12조제2항)으로써 비용추계의 방법 및 절차를 보다 구체화 하였습니다.

- 또한 용어 정비, 방법에 대한 명확화, 서식 등을 신설한 것은 자치법규 입법절차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정비로 판단되며, 달성군의 입법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제도개선 조치로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이 타당합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767호
- 제출일: 2025년 11월 28일
- 제출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5년 12월 2일

2. 제안사유

-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른 2024년 조례 입법평가 개선과제 등 상위 법령의 제·개정사항이 미반영된 조례에 대하여 인용조문 및 명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일괄 정비함으로써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 달성군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령의 조문 및 명칭 변경사항 반영
 - 조문 변경 : 「지방자치법」 제6조 →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 등
 - 명칭 변경 :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2025. 8. 28.)에 따른 “유원시설업” → “테마파크업”으로 변경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동물보호법」, 「혈액관리법 시행령」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및 명칭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개정 내용은 실질적 권리·의무의 변동을 수반하지 않고, 상위법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는 단순 정합성 보완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추가적인 검토 절차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향후에도 상위법령 개정 시 조례별 정기 점검 시스템을 마련하여, 인용조문이 누락되거나 반영이 늦어져 법적 불일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체계의 내실화가 필요합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736호
- 제출일: 2025년 11월 7일
- 제출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5년 11월 16일

2. 제안사유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개정(2025. 1. 1. 시행)으로 추가된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 반영한 조문 정비

3. 주요내용

-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권한 조문 수정(안 제6조 ~ 제7조)
- 제10장 선정 대리인 운영 신설(안 제37조 ~ 제40조)

4.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조문 정비입니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2024년 12월 일부개정됨에 따라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의 5호 및 6호가 추가되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081호, 2024. 12. 17, 타법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175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①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①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5. 법 제93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6.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새롭게 신설된 선정 대리인 운영과 관련하여 대리인의 선정, 관리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대통령령에서 규정 사항 외의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대리인의 임기·위촉,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 방법·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에,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정한 바,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위임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적법하고 타당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768호
- 제 출 일: 2025년 11월 28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5년 12월 2일

2. 제안사유

- 행정서비스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세무부서 기능을 재정비하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응해 통합돌봄 기능을 구축하며,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면서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할 조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기구 조정

3. 주요내용

-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사항
 - 팀 단위 개정사항 : 안 제5조 ~ 제10조
 - 세무과 : 팀 신설(세정, 주민면허세)
팀 이동(지방소득세 → 징수과)
 - 징수과 : 팀 이동(지방소득세 ← 세무과)
명칭변경(자동차 → 자동차세)
 - 복지정책과 : 팀 신설(통합돌봄)
 - 안전총괄과 : 팀 신설(안전정책)

4.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시행 함에 따라 통합돌봄 팀을 신설,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할 조직 기반을 확보하여 효과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새로운 행정수요 대응 및 군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해 팀 이동 및 신설 등의 업무 조정을 개편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변화하는 정책 기조에 맞추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직을 신설하는 등 인력을 재배치함으로써 군정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769호
- 제 출 일: 2025년 11월 28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5년 12월 2일

2. 제안사유

- 통합돌봄지원법 시행과 지역사회 의료·요양 돌봄서비스 본격화를 대비하여 복지정책과에 통합돌봄팀을 신설하고, 재난초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며, 정부정책 변화와 기준인건비제도 등을 고려하여 부서별 기능 재배치 및 인력 정원의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

3. 주요내용

-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 : 안 제2조
 -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중 지방공무원 정원 개정 : 1,052명 → 1,063명
 -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 1,027명 → 1,038명

○ 직급별 공무원 정원표 개정 : 안[별표 3]

- 총 정원 : 1,052명 → 1,063명(+11)
- 본청 정원 : 693명 → 703명(+10)
- 직속기관 정원 : 111명 → 112명(+1)
- 연구사 정원 : 3명 → 4명(+1)
- 기타 직급별 세부 인원 조정

4.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사항에 따른 조직개편이 됨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제1항제3호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에 해당합니다.
- 최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팀을 신설,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할 조직 기반을 확보하여 효과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였으며, 이에 따른 인력 정원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을 11명 증원하였습니다.
- 정원 조정을 통해 민선8기 군정과제의 성공적 추진과 군의 주요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6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770호
- 제 출 일: 2025년 11월 28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5년 12월 2일

2. 제안사유

- 대구광역시 달성군 202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2026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 : 금 3,133백만 원
 - (재)달성교육재단 운영비 : 1,133백만 원
 - 내실 있는 재단 운영을 위한 경비
 - 인력운영비 741백만 원, 기본운영비 349백만 원, 자산취득비 43백만 원
 - (재)달성교육재단 사업비 : 2,000백만 원
 - 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 2,000백만 원
- 출연금 사업 외 장학금 지원 등 16개 사업은 재단 자체 이자 수입 및 이월 잉여금 2,620백만 원을 활용

4.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은 군민의 다양한 교육 수요에 부응하고 교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사업 추진과 내실있는 교육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재단 운영·관리비, 목적사업비 등 출연금을 202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군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재)달성교육재단은 2000년 설립된 (재)달성장학재단이 단순 장학사업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닌 입시 등 교육지원사업을 더해 2023년 전환하여 출범하였습니다.
- 2026년 출연금은 3,133백만원으로 2025년 출연금 4,282백만원 대비 26% 가량(1,149백만원) 감액되었고, 전체 출연금의 약 37%(1,133백만원)를 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비는 기존 사업(장학, 진로진학, 학생 건강증진, 신규교사 연찬회, 심포지엄, 4차산업 교육 지원 등) 예산을 모두 삭감하였으며, 글로벌 교육지원 사업 또한 기존 2,780백만원에서 780백만원 감액한 2,000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이는, 출연금 사업 외 장학금 지원 등의 16개 사업에 대해서 재단의 이자 수입과 이월 잉여금 2,620백만 원을 활용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불필요한 출연금 규모 확대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달성교육재단 운영은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내 기관, 기업, 대학 등과 연계하여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글로벌 미래인재육성 사업 등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신규사업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추진하여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출연금을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025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771호
- 제출일: 2025년 11월 28일
- 제출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5년 12월 2일

2. 제안사유

- 2025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추가(변경) 출연금액 : 7,500백만 원
 - 2025년 (재)달성교육재단 기본재산 적립: 7,500백만 원

4.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계획의 목적은 군민 맞춤형 교육 정책 수립으로 교육 분야 주민 만족도 향상 및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 현재 (재)달성교육재단은 2025년 10월 31일 기준 425억원 정도의 기본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현 기본재산에서 본 출연금(75억)을 추가 편입하여 군민 맞춤형 교육 정책 수립으로 교육 분야 주민 만족도 향상 및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출연금 변경 계획안이 제안되었습니다.
- (재)달성교육재단은 2026년 ①초·중등 영어 방학캠프 운영 확대, ②지역아동센터 영어교육 지원 확대, ③영유아 영어교실(달성이룸캠프) 확대 등 다양한 사업들을 확대하여 새로 건축한 달성이룸캠프 시설 활용도 제고 및 관내 아이들의 교육 정책의 보편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안정적인 장학 기금을 조성하여 지역인재 양성을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교육지원사업 및 장학금 지급을 추진하여 지역인재 양성 및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으로써, 본 출연금 변경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달성군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737호
- 제출일: 2025년 11월 7일
- 제출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5년 11월 16일

2. 제안사유

- 달성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관이 2025.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 설 규 모	종사자수
달성군 육아종합지원센터	테크노중앙대로 231	1,161㎡	18명

나. 위탁대상 사무의 범위 및 내용

-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 운영 전반
-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대한 상담 및 컨설팅
-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다. 조직 및 구성

구 분	계	센터장	팀 장	직 원	비고
인 원(명)	18	1	3	14	

라. 위탁기간: 3년(2023. 1. 1. ~ 2025. 12. 31.)

마. 수탁기관 선정방식: 2023년 신규위탁 당시 공개모집 공고

바. 민간위탁 추진일정

- 2025. 6. 4. : 육아종합지원센터 재계약 추진계획 수립
- 2025. 7. 30. : 사전 성과평가 실시
- 2025. 8. 13. : 재계약 신청 접수 공고
- 2025. 9. 24. : 보육정책위원회 재계약 심의

사.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별도 파일 참조)

바. 성과평가 결과

○ 사전 성과평가 결과 : 평가자 보육팀장

구 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점수
공통사무 (30점)	조직 및 운영	5	3
	재정운영 효율성	5	5
	사업계획의 적정성	5	5
	지도점검 이행노력	5	4
	운영관리	5	5
	만족도 제고 노력	5	5

사업관리 (70점)	어린이집 지원사업	25	23
	가정양육 지원사업	25	23
	마음챙김 상담소 운영사업	10	9
	아뜰리에 체험실 운영사업	10	9
합계		100	91

※ 사전 성과평가표 :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통합매뉴얼(교육부제공)

※ 사전 성과평가 적합 기준 : 70점 이상

○ 보육정책위원회 재계약 심의 결과

안전명	평가 점수								합 계	평균
	위원A	위원B	위원C	위원D	위원E	위원F	위원G	위원H		
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93	95	93	95	97	98	98	99	576	96.00

※ 보육정책위원회 재계약 적합 기준 : 70점 이상

마. 향후일정

- 2025. 11. : 군의회 재계약 동의안 상정
- 2025. 12. : 재계약 협약체결
- 2026. 1. : 시설 운영

4.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달성군육아종합지원센터(2023. 1. ~ 2025. 12.)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계명문화대학교 위탁운영 재계약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 달성군육아종합지원센터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 ①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②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③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대한 상담 및 컨설팅, ④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⑤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기존 수탁기관인 계명문화대학교는 기독교 정신과 대한민국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직업교육의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해 1955년 설립된 대학으로 1970년 보육학과를 개설하여 2006년 이후 대구 광역의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을 위탁운영하고있으며, 2018년 교육부 주관 교육양성기관평가 최우수 등급을 받은 전문 기관입니다.
-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2025. 12.)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계명문화대학교가 재계약 의사 표시를 해 옴에 따라,
- 현 수탁기관을 달성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 96점(평균 70점 이상이면 재계약 가능)으로 적정으로 의결되었으며, 사업의 연속적인 측면이 효율적이므로 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달성군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738호
- 제출 일: 2025년 11월 7일
- 제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5년 11월 16일

2. 제안사유

- 달성군 장난감도서관의 위탁기간 만료 도래 및 수탁기관 재계약 의 사표시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 적격으로 의결되어 재계약함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의 명칭 : 달성군 장난감도서관 운영 위탁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제36조
-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관하여 업무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과 관련이 있는 법인·단체로 관리·운영사무 위탁 필요

다. 위탁대상 사무의 범위 및 내용

- 장난감도서관 7개소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770백만원(1개소 X 110백만원), 군비 100%

마. 조직 및 구성

구분	계	총괄담당자	지점정규직원	지점임시직원
인원	15	1	7	7

바. 위탁기간 : 2026.01.01. ~ 2028.12.31.

-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사. 수탁기관 선정 방식

- 보육정책위원회 성과 평가 실시 후 80점 이상 시 재계약

아. 위탁대상 현황

시설명	소재지	개관일	위탁기간	위탁 기관
화원읍 장난감도서관	화원읍 비슬로 512-66 화원시장상가 내	2017.03.27.	2023.06.01.~ 2025.12.31.	달성복지재단
다사읍 장난감도서관	다사읍 매곡로12길 37 주민자치센터 내	2017.10.11.		
테크노폴리스 장난감도서관	현풍읍 테크노중앙대로 231	2017.12.28.		
옥포읍 장난감도서관	달성군 돌미로 70 대성베르힐단지 내	2018.03.20.		
구지면 장난감도서관	구지면 과학마을로2길 6 화성파크드림단지 내	2018.04.10.		
서재 장난감도서관	다사읍 서재본길 27 서재출장소 옆	2018.11.20.		
논공읍 장난감도서관	논공읍 논공로697-9 달성종합사회복지관 내	2020.07.15.		

자.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일정

- 2025. 9. : 재계약 서류 접수
- 2025. 9. : 보육정책위원회 운영평가 심의
- 2025. 12. : 재계약 계약 체결
- 2026. 1. : 위·수탁 개시

차. 보육정책위원회(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성과평가 결과

- 평균 95점(적합)

안전명	평가점수								합계	평균
	위원1	위원2	위원3	위원4	위원5	위원6	위원7	위원8		
장난감도서관	93	96	95	94	98	100	91	96	572	95.33

4. 관계법령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달성군장난감도서관(2023. 6. ~ 2025. 12.)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위탁운영 재계약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 달성군장난감도서관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① 소장할 물품 등의 구매·정리·분류·보관·보존 및 그 물품 등의 대여·대출 등의 업무, ② 영유아에게 유익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여 업무, ③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기존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은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 전문성을 증진하여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8년 설립된 전문기관으로, 지난 위탁기간 동안 장난감도서관 운영을 통해 노인일자리와의 연계, 찾아가는 장난감도서관 운영, 자원봉사자 활용 등 위탁기간 동안 영유아 발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으로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2025. 12.)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이 재계약 의사 표시를 해 음에 따라,
- 현 수탁기관을 달성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 95점(평균 70점 이상이면 재계약 가능)으로 적정으로 의결되었으며, 사업의 연속적인 측면이 효율적이므로 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달성청년혁신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739호
- 제출 일: 2025년 11월 7일
- 제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5년 11월 16일

2. 제안사유

- 달성청년혁신센터가 위치해 있는 달성여성문화복지센터 별관 3,4층 (645.58㎡)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를 통해 청년(예비)창업가 모집 및 입주·정착 지원, 청년들의 커뮤니티 및 청년세대간의 소통을 지원하여 청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용료 면제 대상
 - 기관명 : 달성청년혁신센터
 - 위치 : 화원읍 성천로 5(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 별관 3,4층)
 - 수탁기관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면제기간 : 2026. 1. ~ 2028. 12. (3년)
 - ※ 수탁기간 : 2023. 1. ~ 2025. 12. (재계약 : 2026. 1. ~ 2028. 12.)

시설명	층별	시설구성	주요기능
달성청년 혁신센터	3층	Start-Up Cafe	- 각종 행사 개최 장소, 청년 누구나 이용 가능한 카페 공간
		센터운영사무실	- 센터 운영 및 청년 애로사항 해결 등
		디지털스튜디오	- 영상촬영, 제품촬영, 라이브 방송 등을 위한 공간
	4층	입주기업 공간	- 청년창업기업 입주공간 (2인실-10개, 4인실-1개)
		메이커스페이스	- 시제품제작, 양디어 실현 공간(3D프린터, UV 프린터 보유)
		회의실	- 회의, 토론, 멘토링 운영 등

4.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근거하여 특정연구기관으로 지정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운영하는 청년혁신센터에 대해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함입니다.
- 재단법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지역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창업지원 경험을 보유한 전문기관으로, 지난 위탁기간 동안 청년혁신센터 운영을 통해 청년창업 지원, 입주기업 육성 등 안정적인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 달성군 청년혁신센터가 입주한 달성여성문화복지센터는 달성군의 공유재산으로 현행법령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제24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지방의회가 동의한다면 그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습니다.
-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제13조제3항제14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중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은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같은법 시행령에서 특정연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기에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을 경우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달성청년혁신센터가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여성문화복지센터 3·4층(645.58㎡)으로 소재지와 사용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재지	면적 (㎡)	사용목적	사용자	허가기간	연간 사용료
화원읍 설화리 556-15 (여성문화 복지센터)	322.79	달성청년 혁신센터	대구경북 과학기술원 (DGIST)	2026.1.1. ~ 2028.12.31. (3년)	45,810,810
	322.79				

- 종합적인 검토결과 상위법령상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의 규정에 부합하며, 해당 시설의 운영 이유 및 공익성과 행정 효율성을 고려할 때 적법하고 타당한 동의안으로 판단됩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피크닉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740호
- 제 출 일: 2025년 11월 7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5년 11월 16일

2. 제안사유

- 사문진피크닉장의 운영시간, 예약 및 환불 절차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여 이용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며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문진피크닉장 운영시간 조정(안 제9조)
- 사문진피크닉장의 예약, 결제, 환불 시스템 개선(안 제10조, 제12조)
- 사용자의 준수사항 신설(안 제15조)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문진피크닉장의 이용 편의와 안전성을 높혀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 안 제9조 운영시간 변경과 관련하여, 피크닉장의 시설을 관리·운영을 위해 근무자가 출근 이후 시설물의 안전 및 편의성을 점검할 시간이 필요하여 기존 09:00에서 10:00로 변경하였습니다.
- 안 제12조 사용료의 반환과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내 단기 물품대여서비스업의 해결기준이 2023년 12월 신설됨에 따라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와 관련된 사항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반환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 안 제15조 사용자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간의 대여 및 물건 임대하는 경우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명기하여 시설의 안전예방과 시설물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관리자가 행할 수 있는 조치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판단됩니다.
-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비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한 점, 이용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고자 한 점,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하고자 한 점등을 볼 때에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741호
- 제출일: 2025년 11월 7일
- 제출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5년 11월 16일

2. 제안사유

- 행정리 분리

3. 주요내용

- 리·반 조정: 1리 증(334리 → 335리)

구분	읍·면	기존			개정			증감		이장정수	비고
		행정리	반	세대수 (인구수)	행정리	반	세대수 (인구수)	리	반		
분리	가창면	삼산리	8	275 (509)	삼산1리	6	226 (424)	-	△2	-	
					삼산2리	2	49 (85)	1	2	1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가창면 내 삼산리의 경우 타 자연부락에 비해 가구수 및 인구수가 많아 이장의 업무가 과중되어 있던 상황이었으며, 지방도로로 인해 생활권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을 해소하고자 행정리·반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행정리·반을 신설하여 주민생활의 편리성과 행정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달성군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772호
- 제출일: 2025년 11월 28일
- 제출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5년 12월 2일

2. 제안사유

- 달성군청 직장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 도래 및 수탁기관 재계약 의사표시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결과, 적격으로 의결되었고 이에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현황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종사자수	비고
달성군청 직장어린이집	옥포읍 강림3길 42	연면적 492.42㎡ (지상3층), 대지면적 294㎡	교직원 13명	-

나. 위탁대상 사무의 범위 및 내용

- 달성군청 직장어린이집 입소 영유아의 보육·건강·안전에 관한 사항
- 달성군청 직장어린이집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영유아의 보육에 관련된 사항

다. 조직 및 구성

구 분	계	원장	교사	보조교사	조리사	운전원	사무원
인 원	13	1	7	2	1	1	1

라. 위탁기간: 3년(2026. 3. 1. ~ 2029. 2. 28.)

마. 수탁기관 선정방식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성과평가 실시 후 70점 이상 시 재계약

바. 민간위탁 추진일정

- 2025. 11. : 재계약 서류 접수
- 2025. 11.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사.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별도 첨부

바. 성과평가 결과

- 평균 88점(적합)

마. 향후일정

- 2025. 12. : 군의회 동의
- 2026. 1. : 위·수탁 협약 체결 및 공보 게재

4.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달성군청 직장어린이집(2023.3.1 ~ 2026.2.28)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현 수탁자와의 위탁운영 재계약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달성군청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 집을 설치하여 군 소속 직원 자녀의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직원 근무 만족도와 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기존 수탁자는 위탁기간동안 특성화·특별활동(미술, 코딩 등)을 통한 영유아의 발달을 지원하여 창의성을 강화하였으며, 2020년, 2024년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인증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2026. 2.)함에 따라 현 수탁자의 재계약 의사 표시에 따라, 현 수탁자를 달성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 88점(평균 70점 이상이면 재계약 가능)으로 적정으로 의결되었으며, 사업의 연속적인 측면이 효율적이므로 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742호
- 제출일: 2025년 11월 7일
- 제출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5년 11월 16일

2. 제안사유

- 202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21,154천원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10,000을 출연('25년 말 1만분의 1.2 → 1만분의 1.0 개정 예정)

4.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계획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출연금 편성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2를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1만분의 1.0으로 개정하는 안건이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행정안전부공고 제2025-2133호_25. 11.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2024년도 보통세는 211,540,323천원으로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21,154천원으로 책정됩니다.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연구기관으로서 자치단체 의뢰과제를 수행하거나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의 교육 등을 맡고 있습니다.
- 본 계획안은, 법정의무경비 성격을 띠고 있으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곳으로 필히 편성해야 합니다. 다만, 관내 타 자치구에 비해 많은 출연금을 출연하고 있는 바,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연구결과, 공무원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743호
- 제출일: 2025년 11월 7일
- 제출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5년 11월 16일

2. 제안사유

○ 달서중고 후적지 개발사업 변경

- 하빈면 감문리 일원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인구 유입이 저조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 부여가 필요함.
- 이에 달서중고 후적지에 주민들이 참여·소통할 수 있는 가족단위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주민들의 힐링공간 수요를 반영하여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맨발황톳길 등을 포함한 주민친화형 복합시설로 변경하고자 함.

○ 논공읍 상2리 마을공영주차장 조성사업

- 논공읍 상리 지역은 대형 개발사업(달성농어촌관광휴양단지, 약산힐링원)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방문객 급증이 예상됨.
- 이에 개발지역 인근 부지를 매입하고 주차장을 조성하여 마을 주민 및 방문객의 주차불편을 예방하고자 함.

○ 남평문씨인홍세거지 인근 토지 매입

- 남평문씨인홍세거지는 경관적 가치가 뛰어나 지속적인 관리·보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나, 사유지 특성상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움.
- 이에 남평문씨인홍세거지의 연못, 목화밭 등 일부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안정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하고 쾌적한 관광환경을 조성·유지하여 방문객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 달창저수지 둘레길 및 수변공원 주차장 부지매입

- 달창저수지 둘레길 및 수변공원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방문 관광객 증가가 예상되므로 주차난 해결 및 공원 경관 유지를 위해 주차장 추가 조성이 필요함.
- 이에 달창저수지 인근 12개 필지를 매입, 주차장을 조성하여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는 주·정차 차량을 줄이고 저수지 및 수변공원 방문객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 다사읍 매곡리 마을공영주차장 조성사업

- 다사읍 매곡리 263-6번지 일대는 아파트, 교회, 학교 등 인구 밀집시설이 다수 소재한 지역으로써, 마을 내 주·정차 차량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민 불편을 초래함.
- 마을 주민들의 주차장 신설 건의에 따라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건물 철거 후 노외주차장을 조성,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을 줄이고 도로통행을 원활케 하여 주민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

○ 환경공무직 휴게시설 및 청소차량 차고지 신축 변경

- 현재 환경공무직 휴게시설은 컨테이너 2동을 연결해 사용하고 있으나, 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탈의실 및 개인 사물함도 없는 열악한 상황이며, 음식물(6대) 및 생활폐기물(3대) 수집 차량을 노상에 주차하여 차량에서 발생하는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음식물 및 생활폐기물 수집 차량의 악취 민원을 적극 해결하고 환경공무직의 휴게환경을 개선하여 근무 효율을 증대하고자 현재 청소차량을 주차하고 있는 논공읍 금포리 1303번지에 휴게시설과 차고지

신축을 계획하였으나, 군청사 주차장 부지확장 매입계획에 따라 신축 위치를 연접한 금포리 1302로 변경하고자 함.

○ 달성 하목정 주차장 조성사업

- 달성 하목정의 국가유산 승격 및 백일홍 개화시기 도래에 따라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하목정 주변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하목정 인근 부지를 매입, 주차장을 조성하여 방문객의 편의를 개선하고 인근 지역의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 구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변경

- 구지지역은 국가산업단지 개발 및 대구산업선 개통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및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역주민 및 근로자들의 문화수요에 대비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 수영장 및 영유아 체험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당초 계획을 확장, 특색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구성하고자 함.

○ 경찰수련원 건립에 따른 국·공유재산 교환

- 대구지방경찰청에서 경찰수련원 건립 부지 확보를 위해 경찰청 국유재산(구 만촌관사)과 군유재산(유가읍 용리 34 등 20필지)의 교환을 요청함.
- 국·공유재산 교환을 통해 경찰수련원을 조속히 유치하고 비슬산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인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달성군보건소 제2주차장 조성사업

- 달성군보건소 교육 및 보건 프로그램 활성화에 따라 방문 민원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보건소 인접지역에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고 야간엔 마을주차장으로

- 개방하여 보건소 방문 민원인 및 인근 주민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또한, 향후 대규모 감염병 발생시 선별진료소 설치공간으로 활용하여 감염병 의심환자 동선분리 등 감염 확산 억제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달서중고 후적지 개발사업 변경

- 변경개요

구 분	당 초 (제30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변 경	비 고
사업명	달서중고 후적지 개발사업	하빈 휴파크 건립사업	-
부지면적	17,009.8㎡	17,246.8㎡	증 237㎡
연면적	7,446.54㎡	3,153㎡	감 4,293.54㎡
총사업비	378.5억원	398억원	증 19.5억원
주요시설	주민 커뮤니티센터 작은 영화관 어린이 놀이터 전시관 등	웰니스센터, 실내체육시설, 산책로(맨발황톳길) 등	사업내용 변경

- 위 치 : 하빈면 감문리 815번지 일원(구. 달서중·고등학교)
- 규 모 : 부지면적 17,246.8㎡ / 연면적 3,153㎡(건물 2동)
- 사업기간 : 2023. 10. ~ 2028. 7.
- 주요시설
 - 웰니스센터

층 수	면 적(m ²)	내 부 시 설
3층	325	사무실, 회의실 등
2층	444	스크린파크 골프장
1층	461	휴라운지, 휴카페 등
총계	1,230	

· 다목적체육관

층 수	면 적(m ²)	내 부 시 설
2층	1,188	다목적체육관
1층	735	목욕탕
총계	1,923	

- 총사업비 : 398억원
 - 부지매입비 248억원, 공사비 117.8억원, 감리비·용역비 등 32.2억원
 - * 부지매입비 교육정책과 집행 / `27년 학교 이전 후 잔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 예정

※ 기준가격(대장가격)	
- 토지 매입(공시지가×면적)	: 5,481,388,800원
- 건물 매입(시가표준액)	: 1,973,131,900원
- 건물 철거(시가표준액)	: 749,242,210원

- 추진상황
 - 2023. 10. : 달서중고 부지 매매계약 체결
 - 2024. 1. ~ 12. : 후적지 개발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 2024. 12. : 달서중고 후적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 2025. 2. :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2025. 3. ~ 9. : 하빈면 주민설명회 개최(1차, 2차)
 - 2025. 9. ~ 10. : 기본구상·타당성 조사 완료, 지방재정투자심사(2단계)
- 향후 추진계획
 - 2026. 1. : 공공건축위원회 심의,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 착수
 - 2026. 2. : 건축설계공모
 - 2026. 5. : 당선작 선정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6. 6. ~ 2027. 3. : 도시계획 시설 변경 등 행정절차 추진
 - 2027. 4. ~ 2028. 7. : 착공 및 준공

○ 논공읍 상2리 마을공영주차장 조성사업

- 위 치 : 논공읍 상리 117번지
- 면 적 : 1,086m²
- 사업기간 : 2026. 1. ~ 2026. 12.
- 주요시설 : 노외주차장 1개소(주차면수 20면 정도)
- 총사업비 : 6.5억원
 - 부지매입비 5.5억원, 공사비 1억원

※기준가격(대장가격)

-토지(공시지가 × 면적) : 252,060,600원

-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 2025. 9. : 마을주차장 부지 매입계획 수립
 - 2026. 2. : 부지매입
 - 2026. 6. : 공사설계 및 착공
 - 2026. 12. : 준공

○ 남평문씨인홍세거지 인근 토지 매입

- 위 치 : 회원읍 본리리 395-5, 402-2, 401-3, 402-1, 402-3번지
- 규 모 : 12,064m² / 3,650평 정도
- 사업기간 : 2026. 1. ~ 2026. 6.
- 주요시설 : 연못, 목화밭, 매실나무 군락지 등
- 부지매입비 : 45억원

※기준가격(대장가격)

-토지(공시지가 × 면적) : 1,380,472,200원

- 향후 추진계획
 - 2026. 1. : 감정평가 및 토지매입 가격결정
 - 2026. 6. : 토지 매입 및 등기

○ 달창저수지 둘레길 및 수변공원 주차장 부지매입

- 위 치 : 유가읍 가태리 945-3번지 등 12필지
- 규 모 : 10,707m² / 3,244평 정도
- 사업기간 : 2026. 1. ~ 2026. 12.
- 주요시설 : 공용주차장 2개소(주차면수 350대정도)
- 총사업비 : 49억원
 - 부지매입비 43억원, 조성비 6억원

※기준가격(대장가격)

-토지(공시지가 × 면적) : 1,348,936,100원

-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 2023. 11. ~ 2024. 6. :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 2026. 1. : 감정평가 및 매입금액 확정
 - 2026. 6. : 토지매입
 - 2026. 6. ~ 2027. 12. : 착공 및 준공

○ 다사읍 매곡리 마을공영주차장 조성사업

- 위 치 : 다사읍 매곡리 263-6번지
- 규 모 : 부지면적 994m², 연면적 420.47m²
- 사업기간 : 2026. 1. ~ 2026. 12.
- 주요시설 : 노외주차장 1개소(주차면수 30면 정도)
- 총사업비 : 34.5억원
 - 부지매입비 29.5억원, 공사비 5억원

※기준가격(대장가격)

-토지(공시지가 × 면적) : 1,154,034,000원

-건물 매입(시가표준액) : 28,382,370원

-건물 철거(시가표준액) : 28,382,370원

-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 2025. 3. ~ 4. : 읍·면별 사업대상지 수요조사
 - 2025. 7. : 사업대상지 선정
 - 2026. 1. ~ 5. : 부지매입, 실시설계 용역 시행 및 관계부서협의
 - 2026. 5. ~ 7.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 2026. 7. ~ 12. : 공사 착공 및 준공

○ 환경공무직 휴게시설 및 청소차량 차고지 신축 변경

- 변경개요

구 분	당 초 (제31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변 경	비 고
사 업 명	환경공무직 휴게시설 및 청소차량 차고지 신축	-	-
부지면적	논공읍 금포리 1303번지 (부지면적 1,653㎡)	논공읍 금포리 1302번지 (부지면적 1,180㎡)	위치이동 감 473㎡
연 면 적	385.4㎡(2층)	399.6㎡(1층)	층수변경 증 14.2㎡
총사업비	10억원	11억원	증 1억원
주요시설	샤워장, 사무실, 화장실, 폐기물차량 차고지, 창고 등	-	-

- 위 치

- (기존) 논공읍 금포리 1303번지(현 청소차량 주차장)
- (변경) 논공읍 금포리 1302번지

- 규 모 : 부지면적 1,180㎡ / 연면적 399.6㎡(지상 1층)

- 사업기간 : 2024. 9. ~ 2026. 10.

- 주요시설

- 휴게시설 : 락커룸, 샤워장, 사무실, 화장실 등
- 차고지 : 음식물 및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차고지, 창고 등

- 총사업비 : 11억원 정도

- 공사비 9억원, 설계비 0.4억원, 감리비 0.9억원, 토목공사비 0.7억원

※기준가격(대장가격)

- 건물 신축(사업비) : 1,129,160,000원

-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 2024. 9. : 실시계획 수립
 - 2025. 5. :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5. 7. : 실시설계 용역 중단(회계과 군청사 주차장 확장부지 매입 계획 수립)
 - 2025. 12. : 실시설계 용역 재개
 - 2026. 6. : 입찰 및 계약
 - 2026. 7. : 착공
 - 2026. 10. : 준공

○ 달성 하목정 주차장 조성사업

- 위 치 : 하빈면 하산리 1043-2번지
- 면 적 : 1,005m² / 304평 정도
- 사업기간 : 2026. 1. ~ 2026. 9.
- 주요시설 : 공용주차장 1개소(주차면수 25대정도)
- 총사업비 : 15억원
 - 부지매입비 12.5억원, 공사비 2.5억원

※기준가격(대장가격)

-토지(공시지가 × 면적) : 378,784,500원

-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 2025. 1. ~ 5. : 주차장 조성부지 현황조사
 - 2026. 1. ~ 3. : 토지보상 협의 및 매입
 - 2026. 4. ~ 6. : 경계측량 및 실시설계 용역
 - 2026. 7. ~ 12. : 착공 및 준공

○ 구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변경

- 변경개요

구 분	당 초 (제31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변 경	비 고
사업명	구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	-
부지면적	8,477m ²	-	-
연면적	4,119m ²	5,269m ²	증 1,150m ²
총사업비	255억원	344억원	증 89억원
주요시설	문화센터, 어린이 체험공간, 체육시설 등	수영장, 문화센터, 어린이(영유아) 체험공간, 북카페 등	수영장, 북카페 추가

- 위 치 : 구지면 응암리 1233번지
- 규 모 : 부지면적 8,477m² / 연면적 5,269m²(2개동)
- 사업기간 : 2023. 11. ~ 2028. 12.
- 주요시설

· 문화동(제1동)

층 수	면 적(m ²)	내 부 시 설
3층	284	문화교육실, 관리사무실 등
2층	755	문화센터, 체육시설, 다목적 홀 등
1층	1,100	북카페, 어린이(영유아) 체험시설 등
공용면적	1,180	-
총계	3,319	

· 수영장동(제2동)

층 수	면 적(m ²)	내 부 시 설
1층	1,950	수영장, 샤워실, 물품보관실 등

- 총사업비 : **344억원**(부지매입비 포함)

· 부지매입비 28억원(기투자), 공사비 240억원, 설계비 13억원, 기타 63억원

※기준가격(대장가격)

- 건물 신축(사업비) : 31,600,000,000원

- 추진상황
 - 2023. 11. : 구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계획 수립
 - 2023. 12. : 기업 지방이전 촉진 우수모델 공모사업 선정
 - 2024. 2. :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부지매입
 - 2024. 4. :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
 - 2024. 9.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 2025. 1. : 공공건축심의
 - 2025. 5. : 사업계획 변경안 수립
 - 2025. 7. : 공공건축심의 재심사
 - 2025. 9. : 건축 설계 공모 발주
- 향후 추진계획
 - 2026. 1. ~ 12.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027. 4. : 착공
 - 2028. 12. : 준공

○ 경찰수련원 건립에 따른 국·공유재산 교환

- 요청기관 : 대구지방경찰청
- 위 치
 - 국유재산 : 수성구 만촌동 425-5번지, 부지면적 991.7㎡, 연면적 323.22㎡
(구 만촌관사 : 달성군 관광홍보관 운영)
 - 군유재산 : 유가읍 용리 34번지 등 20필지, 토지면적 20,724㎡
- 사업기간 : 2024. 1. ~ 2026. 1.
- 교환방법 : 상호목적물 취득 및 교환차금 정산
 - 비슬산 관광지 내 상가시설지구 ⇔ 구. 만촌관사 + 교환차금

※기준가격	
-토지 취득(공시지가 × 면적) :	2,672,631,500원
-건물 취득(시가표준액) :	31,292,870원
-토지 처분(공시지가 × 면적) :	2,442,154,720원

- 교환대상 재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위 치	면 적	가감정 가격	비 고
국유재산	만촌동 425-5	토지 991.7㎡ 건물 323.22㎡	4,963 (△1,127)	경찰청 소유
군유재산	유가읍 용리 34 등 20필지	토지 20,724㎡	6,090	비슬산 관광지 상가시설지구

- 추진상황

- 2023. 8. : 공유재산 교환 검토 요청(경찰청)
- 2024. 1. : 경찰수련원 유치 확정
- 2024. 12. : 경찰수련원 신축사업 설계 착수(대구지방경찰청)
- 2025. 4. : 기본계획 보고회 개최(대구지방경찰청)
- 2025. 5. : 기본계획안 변경협의(군 ⇄ 대구지방경찰청)
- 2025. 7. : 경찰수련원부지(상가시설지구) 현황측량완료
- 2025. 9. : 도시관리계획(도로) 변경(결정) 완료

- 향후 추진계획

- 2025. 11. : 상호협력약정서(MOU) 체결 및 교환계획 수립
- 2025. 12.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및 감정평가 실시
교환차금 세입조치
- 2026. 1. : 등기이전 및 교환완료

○ 달성군보건소 제2주차장 조성사업

- 위 치 : 현풍읍 하리 245-7, 250-1, 251, 262-4, 262-6, 245-1번지
- 규 모 : 1,866㎡ / 563평 정도
- 사업기간 : 2026. 1. ~ 2026. 9.
- 주요시설 : 공용주차장 2개소(주차면수 60대정도)
- 총사업비 : 45억원
 - 부지매입비 43억원, 공사비 2억원

※기준가격(대장가격)

-토지(공시지가 × 면적) : 1,818,258,600원

-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 2025. 9. : 달성군보건소 제2주차장 조성사업 계획수립
 - 2025. 10. : 중기지방재정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 2026. 1. ~ 3. : 토지보상 보상협의 추진 및 부지매입
 - 2026. 4. ~ 5. : 시설설계용역 발주 및 지적 측량
 - 2026. 7. ~ 9. : 공사 착공 및 준공

4.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 달서중고 후적지 개발사업 변경 건은 인구 유입이 저조한 하빈면 감문리 일원에 주민 소통·참여가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추진된 사항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맨발 황톳길 등을 포함한 주민친화형 복합시설로 변경함에 따라 사업 내용 및 총사업비가 조정되었습니다.
- 논공읍 상2리 마을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개발사업 증가로 향후 방문객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 및 방문객의 주차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 남평문씨인흥세거지 인근 토지 매입 건은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의 안정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쾌적한 관광환경을 조성·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유지 특성으로 인한 관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 달창저수지 둘레길 및 수변공원 주차장 부지매입 건은 방문객 증가에 따른 주차수요 충족을 위해 주차장을 확충하고, 주변 교통혼잡 및 안전사고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 다사읍 매곡리 마을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인구 밀집지역 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추진되는 만큼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환경공무직 휴게시설 및 청소차량 차고지 신축 변경 건은 현재 열악한 휴게환경과 노상 주차로 인한 악취민원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군청사 주차장 확장계획에 따른 부지 변경과 시설 규모 조정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 달성 하목정 주차장 조성사업은 국가유산 승격 및 방문객 증가에 대비하여 주차공간을 확충함으로써 주차불편 해소 및 지역 관광 편의 증진을 위한 필수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 구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변경 건은 국가산단 개발 및 산업선 개통 등으로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지역의 문화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수영장 및 영유아 체험시설 등 주민 수요가 높은 시설을 반영한 변경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경찰수련원 건립에 따른 국·공유재산 교환 건은 경찰수련원 조기 유치 및 비슬산 관광지와 연계할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상호 목적물 취득 방식의 교환은 적절한 절차라 판단됩니다.
- 달성군보건소 제2주차장 조성사업은 보건 프로그램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민원인의 주차불편 해소 및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간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 10건은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모두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2026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773호
- 제 출 일: 2025년 11월 28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5년 12월 2일

2. 제안사유

- 2026년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달성복지재단 출연 : 18억 1,020만 원
 - 달성복지재단 운영비 : 8억 1,020만 원
 - 재단운영을 위한 인건비 5억9천500, 기본경비 2억1400, 사업비·예비비 120
 - 기본재산 적립금: 10억 원
 - 복지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정안정성 확보
 - 산하시설 재위탁 및 신규시설 위탁시 기본재산에 따른 평가점수 확보

4. 관계법령

-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재)달성복지재단은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 및 청소년 보호육성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군민에게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 본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 2026년 출연금은 18억 1,020만 원으로 2025년 출연금 7억 3,400만 원 보다 10억 7,62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2026년도 인건비 기본 상승분 및 직무대리 직원 복귀로 인한 예산증액 7천 6백만 원 가량과 기본 자산 21억 원에 추가로 10억 원을 편성하여 재단의 재정 안정성 확보입니다.
- 이에, 본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744호
- 제출일: 2025년 11월 7일
- 제출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5년 11월 16일

2. 제안사유

- 상위 법률 변경 사항 조문 이동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상위법에 근거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 변경에 따라 관련 조문 개정(안 제1조, 제3조)
- 조문 신설(안 제5조~제12조)
 - 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 명시
- 부칙 신설
 - 위원 임기 연임 제한 신설로 기존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

4. 관계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법률 변경 사항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구체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 기존 조례의 목적에서 상위법령의 조문내용을 인용한 사항은 2018년 개정되어 조문번호가 변경된 점을 반영하였습니다.

(현 행) 제2조제6호에 위임한 사항 ...

(개정안) 제2조제8호에 위임한 사항 ...

긴급복지지원법 (2016. 12. 2. 일부개정, 2016. 12. 2. 시행)	긴급복지지원법 (2018. 12. 11. 일부개정, 2019. 6. 12.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신 설>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 설>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다음으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관내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르면 위원회를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1. 설치 또는 변경의 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 구성 및 임기
3.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소집 및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5.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사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와 관련된 관내 조례의 규정사항에 맞추어 안 제5조~12조를 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정비에 따른 합리적 조문정비와 위원회 운영체계와 관련하여 관련 조례와 정합성을 높인 것으로, 적법하고 타당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